



제434회국회(임시회)폐회중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

■ 김건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462호)

2026. 4.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곽현준

목 차

I . 김건의원 대표발의(제2217462호)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안 제48조의9 신설)	2

I. 김건의원 대표발의(제2217462호)

1.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건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6. 3. 13.

다. 회 부 일 : 2026. 3. 16.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령에서는 공공주택의 유형에 따른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에 대해서는 정하고 있으나 입주자 선정 여부에 대한 통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고 있으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개별 안내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9 신설).

3. 검토의견

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개별 통보(안 제48조의9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적용례 : 이 법 시행 이후 공공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입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여부의 통보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실무적으로 입주자 선정 결과는 공공주택사업자가 청약 관련 홈페이지에 결과를 공개하면서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 한하여 그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있음.

이에 개정 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정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며, 행정 편의성 향상 측면에서 긍정적인 입법으로 생각됨.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하면서, 개정안에 규정된 방법만으로도 입법 목적의 달성이 가능하므로 추가적인 방법에 대한 위임 규정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이 경우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둘 필요가 없으므로, 국민에게 행정 편의를 제공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됨.

【안 제48조의9 관련 국토교통부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사업 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 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국토교 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48조의9(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에 관한 정보의 제공) 공공주택사업 자는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한 사 람에게 공공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 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문 의 처

02)6788-5574